

#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3. 06. 26(수)  
기획행정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3. 06. 03

나. 제안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13. 06. 03

라. 상정일자 : 2013. 06. 26(제209회 임시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)

- 제안설명 : 유병윤 국제협력관
- 검토보고 :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김희식
- 질의 및 토론
- 원안가결

## 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국제교류센터의 명칭을 국제교류재단으로 변경하여 대외적 정체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각종 교류사업 시행에 따른 올바른 인식을 도모하고, 결산서 제출기한을 변경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법인의 명칭이 국제교류센터에서 국제교류재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함.(안 제명, 제1조, 제2조, 제3조, 제18조 및 제20조)
- 법인이 제출하는 결산서 제출기한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변경함.(안 제16조)
- 그 밖에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.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인의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과,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비 사항으로
- 개정조례안 제명 및 제1조 이하, 법인의 명칭을 「국제교류센터」에서 「국제교류재단」으로 변경하는 사항은 지난 2013년 4월 16일 외교부의 허가를 받아 정관을 개정한데 이어 근거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법인명칭의 변경에 따라 변화되는 조직의 비전 및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- 조례안 제16조 (결산서 제출)은 법인 결산서 제출 시기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앞당겨서 원활한 결산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고,
- 그 밖에 개정 사항은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음.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<홍성욱 위원>

- 결산서 제출기한을 앞당길 때 업무처리에 문제는 없는가?  
→ 출연기관 전체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문제 없음
- 구체적인 명칭은?  
→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재단으로 변경, 재단이란 명칭이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측면이 있어 변경하게 됨.
- 재단법인 인천광역시국제교류재단은 재단이 중복되는 느낌임?  
→ 부산은 국제교류재단, 서울은 글로벌센터 임. 단, 서울은 기능적인 측면에 차이 있음. 우리시는 재단법인으로 정체성을 알리는 의미임
- 대외적으로 외국과 교류할 때 재단이란 명칭이 인식의 격이 높다는 측면인 듯 함. 향후, 조례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.

## 5. 토론요지

- 가. 찬 성 : 이용범, 차준택, 류수용, 이상철, 홍성욱 위원
- 나. 반 대 : 없음

## 6. 심사결과

- 원안가결(재석위원 5명, 찬성 : 5명)

## 7. 소수의견 요지

- 없음

## 8. 기타 사항

- 특이사항 없음

붙임 :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#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인천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”를 “인천광역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”를 “인천광역시”로, “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(이하 “국제교류센터”라 한다)를”을 “인천광역시국제교류재단을”으로, “운영에 관하여”를 “운영에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국제교류센터”를 “인천광역시국제교류재단(이하 “국제교류재단”이라 한다)”로, “민법”을 “「민법」”으로, “의한다”를 “따른다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국제교류센터는 「민법」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국제교류재단은 「민법」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호 중 “시”를 “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0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5조 중 “범위안”을 “범위”로, “언어”를 “받아”로 한다.

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의한다”를 “따른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의하여 선임하되”를 “따라 선임하며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5인”을 “5명”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통할”을 “총괄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유고시”를 “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”로 한다.

제11조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12조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14조 중 “의한다”를 “따른다”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전단 중 “1월전”을 “1개월 전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이와 ”를 “또한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에 의거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6조 중 “매회계년도”를 “매 회계연도”로, “3월”을 “2개월”로 한다.

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국제교류센터는”을 “국제교류재단은”으로,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9조 중 “제18조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8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0조 중 “국제교류센터대표이사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국제교류재단대표이사가 제18조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21조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22조 중 “「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」”을 “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”으로 한다.

제23조 중 “운영에 관하여”를 “운영에”로,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자원봉사활동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제2호 중 “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대표이사”를 “인천광역시국제교류재단대표이사”로 한다.

② 인천광역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제2호 중 “인천국제교류센터”를 “인천국제교류재단”으로 한다.

③ 인천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대표이사”를 “인천광역시국제교류재단대표이사”로 한다.

④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제5호 중 “국제교류센터”를 “국제교류재단”으로 한다.

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2항제2호다목 중 “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”를 “인천광역시국제교류재단”으로 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<p>인천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</p> <p>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국제교류관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(이하 “국제교류센터”라 한다)를 설립하고,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 (적용범위) 국제교류센터의 설립·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 <p>제3조 (설립) 국제교류센터는 「민법」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(이하 “법인”이라 한다)으로 설립한다.</p> <p>제4조 (대상사업) 법인은 제1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생략)</li> <li>2. <u>시</u>의 국제교류사업 지원</li> <li>3. ~ 9. (생략)</li> <li>10. <u>기타</u>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위탁하는 사업</li> </ol>	<p>인천광역시 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</p> <p>제1조 (목적) ----- 인천광역시 ----- ----- 인천광역시국제교류 재단을 ----- 운영에 ----- -----.</p> <p>제2조 (적용범위) 인천광역시국제교류재단(이하 “국제교류재단”이라 한다)----- 「민법」----- ----- 따른다.</p> <p>제3조 (설립) 국제교류재단은 「민법」에 따른 ----- -----.</p> <p>제4조 (대상사업) -----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2. <u>인천광역시</u>(이하 “시”라 한다)----- -----</li> <li>3. ~ 9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10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</li> </ol>			

현행	개정안
제5조 (수익사업) 법인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	제5조 (수익사업) ----- ----- ----- 범위 ----- -- 받아 -----.
제6조 (정관)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	제6조 (정관) ----- 각 호 ----- -----.
1. ~ 10. (생략)	1. ~ 10. (현행과 같음)
제7조 (임원) ① (생략)	제7조 (임원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이사장,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	② ----- ----- 따른다.
③ 이사장, 이사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하되,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	③ ----- ----- 따라 선임하며 ----- -----.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8조 (고문) ① 법인에는 5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, 고문은 이사가장이 위촉한다.	제8조 (고문) ① ----- 5명 ----- ----- --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9조 (임원의 직무) ① (생략)	제9조 (임원의 직무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대표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법인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	② ----- ----- 총괄 ----- -----.
③ ~ ④ (생략)	③ ~ ④ (현행과 같음)
제10조 (이사장의 직무대행) 이사장이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	제10조 (이사장의 직무대행) ----- --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----- -----.

현행	개정안
제11조 (직원) 법인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<u>의하여</u> 이사장이 임명한다.	제11조 (직원) ----- ----- <u>따라</u> ----- -----.
제12조 (운영재원)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인천광역시의 출연금, 자산운영과 관련된 이자 수익금, 사업수익금 및 <u>기타</u> 수입으로 충당한다.	제12조 (운영재원) ----- ----- ----- <u>그 밖의</u> ----- -----.
제14조 (사업연도) 법인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<u>의한다</u> .	제14조 (사업연도) ----- ----- <u>따른다</u> .
제15조 (세입·세출 승인 및 의회보고) ① 법인은 회계연도 개시 <u>1월</u>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·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<u>이와</u> 같다.	제15조 (세입·세출 승인 및 의회보고) ① ----- <u>1개월</u> 전----- ----- ----- <u>또한</u> -----.
② 시장은 <u>제1항에</u> 의거 승인한 사항을 인천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	② ----- <u>제1항에 따라</u> ----- -----.
제16조 (결산서 제출) 법인은 <u>매회계</u> <u>년도</u> 종료 후 <u>3월</u> 이내에 세입·세출의 결산서를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제16조 (결산서 제출) ----- <u>매 회계</u> <u>연도</u> ----- <u>2개월</u> ----- ----- -----.
제18조(국제관계자문) <u>국제교류센터</u> 는 다음 <u>각호</u> 에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.	제18조(국제관계자문) <u>국제교류재단</u> 은 ----- <u>각 호</u> ----- -----.
1. ~ 4. (생략) 5. <u>기타</u>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	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<u>그 밖에</u> -----

현행	개정안
제19조(자문실적부 비치) 시장은 <u>제18조</u>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.	제19조(자문실적부 비치) ----- <u>제18조에 따라</u> ----- ----- -----.
제20조(자료제공) <u>국제교류센터대표이사</u> 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해당부서에서는 관련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.	제20조(자료제공) <u>국제교류재단대표이사</u> 가 제18조에 따른 ----- ----- -----.
제21조 (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) 시장은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의 규정에 <u>의하여</u>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.	제21조 (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) --- ----- ----- <u>따라</u> ----- ----- -----.
제22조 (공유재산의 대부 등) 시장은 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「 <u>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</u> 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에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.	제22조 (공유재산의 대부 등) ----- ----- ----- 「 <u>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</u> 」 ----- ----- -----.
제23조 (운영규정) 법인의 <u>운영에</u>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회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.	제23조 (운영규정) ----- <u>운영에</u> ----- ----- ----- <u>범위</u> ----- ----- -----.